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 이유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 및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개정사항을 국내법에 수용하고 미비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안전한 위험물 운송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험물질 및 위험물 용기 등 용어 신설(안 제2조제27호·제28호·제29호·제30호·제31호)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개정에 따라 중합성물질, 위험물 용기의 덧 포장, 회수압력용기 및 제어온도와 비상온도의 정의 신설

나. 덧포장된 용기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도록, 덧포장된 위험물 용기에 “OVERPACK” 표시 규정 추가(안 제6조제2항)

다. 위험물명세서에 운송 시 회수압력용기임을 기재하도록 신설(안 제16조제6항 및 안 제35조제5항)

라. 송하인은 온도제어가 필요한 제4.1급의 자기반응성 물질, 중합성물질 및 제5.2급의 유기과산화물에 대하여 위험물명세서 등 운송서류

에 제어온도와 비상온도를 기재하도록 규정(안 제16조제7항 및 제34조제7항)

마. 선장은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아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물질에 대해서는 운송하지 못하도록 규정(안 제18조제3항)

바. 위험물이 바다에 유실 또는 유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 선장은 의무적으로 사고 발생지역의 연안국 또는 해양수산부에 사고를 보고하도록 규정(안 제25조)

사. 훈증 소독된 컨테이너의 경우 훈증·소독의 효과를 위해 24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선박에 적재가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35조제3항)

아. 송하인은 화약류의 안전한 해상운송을 위해 화약류 등을 운송하기 전에 그 분류의 적절성에 대해 수출국(제조국) 주무관청(관할지방해양수산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안 제39조의2)

자.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선박에서 화약류와 혼합적재가 금지된 위험물 품목을 삭제(안 제42조제5항)

차. 화약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화약류의 선박 내 적재위치를 거주 구역, 구명설비 및 대중 접근로가 있는 구역으로부터 수평거리로 12m 이상(기존 8m) 떨어진 장소에 적재하도록 개정하고 선측으로부터 선박너비의 1/8 또는 2.4미터 중 짧은 거리 이상 떨어지도록 규정(안 제48조제2항제3호·제5호)

카. 제조업계의 경제적 손실과 불편을 해소하고 정부대행기관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행기관 지정요건에 ISO 품질경영시스템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대행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지정 제한요건
변경(안 제208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사전 심사예정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안)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7호부터 제3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중합성(重合性)물질"이란 안정화되지 않은 경우, 더 큰 분자 또는 중합체를 형성하여 강한 발열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28. "덧 포장(OVERPACK)"이란 운송 중 취급과 적재의 편의를 위하여 1개 이상의 포장화물을 하나의 단위(UNIT)로 추가 포장한 것으로 단일 송하인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9. "회수압력용기"란 손상이나 결함이 있거나 부적합한 상태의 압력용기를 회수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운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압력용기를 말하며, 수용량이 3,000리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0. "제어온도"란 위험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최고 온도를 말한다.

31. "비상온도"란 위험물의 온도 제어를 실패하여 비상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온도를 말한다.

제6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또한 덧 포장한 경우에는 덧 포장(OVERPACK)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제2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관
할지방해양항만청장등””을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으로 하고, “해양
사무소장”을 “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관할지방해양항만청장등”을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
으로 한다.

제16조제6항 중 “세정되지”를 “회수압력용기, 세정되지”로, ““비세정빈
용기(EMPTY UNCLEANNED 또는 RESIDUE- LAST CONTAINED)””
를 ““회수압력용기(SALVAGE PRESSURE RECEPTACLE)”, “비세정
빈용기(EMPTY UNCLEANNED 또는 RESIDUE- LAST CONTAIN
ED)””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해당 위험물이 다음 각 호의 물질인 경우에는 관련 서류에 각각 제
어온도(Control temperature)와 비상온도(Emergency temperature)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운송 중 온도관리가 필요한 제4.1급의 자기반응성 물질, 중합성 물
질 및 제5.2급의 유기과산화물
2.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험물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위
험물의 품명에 “안정화된 것(STABILIZED)”이라는 문구가 포함되
어 있고 위험물의 안정화를 위해 온도제어가 필요한 물질

제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위험물 중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위험물의 경

우에는 위험한 분해 또는 중합반응을 방지하기 위해 송하인이 온도제어, 반응 억제제 사용 등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한 것을 확인하고 위험물을 운송해야만 한다.

1. 제2급의 고압가스
2. 제3급의 인화성 액체류
3. 제6.1급의 독물
4. 제8급의 부식성 물질

제20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24조의2제1항, 제24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24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24조의5 각 호 외의 본문 중 “관할지방해양항만청장등”을 각각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으로 한다.

제25조 본문 중 “발생하였을”을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위험물이 바다에 유실되었거나 선외로 유실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해양사무소장”을 “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제34조제5항 중 “비세정빈용기인”을 “회수압력용기, 비세정빈용기인”으로, ““비세정빈용기(EMPTY UNCLEANED 또는 RESIDUE - LAST CONTAINED)””를 ““회수압력용기(SALVAGE PRESSURE RECEPTACLE)”, “비세정빈용기(EMPTY UNCLEANED 또는 RESIDUE - LAST CONTAINED)””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해당 위험물이 다음 각 호의 물질인 경우에는 관련 서류에 각각 제어온도(Control temperature)와 비상온도(Emergency temperature)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운송 중 온도관리가 필요한 제4.1급의 자기반응성 물질, 중합성물질 및 제5.2급의 유기과산화물
2.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험물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위험물의 품명에 “안정화된 것(STABILIZED)”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고 위험물의 안정화를 위해 온도제어가 필요한 물질

제3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선장은 훈증 소독된 컨테이너를 선적할 경우에는 훈증제가 컨테이너에 투입된 후부터 최소 24시간이 지난 이후에 선박에 적재하여야 하며 해당 컨테이너에 제33조제4항에 따른 표찰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송하인은 훈증 소독된 컨테이너를 선박에 선적할 경우에는 훈증 소독을 실시한 일자와 시간, 사용한 훈증제의 종류와 양(量) 등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9조의2(화약류등 분류 승인) ① 송하인은 화약류를 운송하기 전에 국제연합번호, 품명 등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따른 화약류 분류에 대해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화약류 분류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소속의 위험물운송 전문가 위원회(UNTDG)가 개발한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에서 정한 시험기준에 따른 화약류 분류 시험결과 또는 방위사업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한 화약류의 국제연합번호가 기재된 서류

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경찰청장의 허가서류 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출 허가 결과 서류 또는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의 수출 허가 서류

4. 그 밖에 화약류 분류를 위해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③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화약류 분류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하여 분류가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분류가 적합할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의 화약류분류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화약류 분류가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2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3조제1항, 제45조제5항 및 같은조제6항제2호 중 “관할지방해양항만

청장등”을 각각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3호 중 “8미터”를 “12미터”로, “유지”를 “유지(등급 1.4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선측으로부터 선박너비의 8분의 1 또는 2.4미터 중 짧은 길이 이상의 거리를 두어 적재할 것. 다만, 화약류 등급 1.4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23조의2제1항, 제147조제3항, 제148조제3항, 제163조 단서, 제197조 단서, 제204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6항, 제205조제1항·제3항·제4항·제8항 및 제9항, 제205조의2제1항·제2항·제3항 및 제6항 중 “관할지방해양항만청장등”을 각각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으로 한다.

제208조제1항 중 “시험·검사기관이어야 한다”를 “시험·검사기관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4조에 의한 품질경영시스템(ISO 9000 표준시리즈)을 인증받은 기관이어야 한다”로 한다.

제220조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해양사무소장”을 “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제225조 단서, 제232조제2항, 제233조제1항·제2항 중 “관할지방해양항만청장등”을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Administrator of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를 “Administrator of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도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도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위험물 선박운송 저장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1.23>

위험물운송적합증 []발 급 신청서
[]재발급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변경)발급: 3일 재 발 급: 즉시
선박 소 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선박의 종류 및 명칭	선박번호
	위험물운송적합증 번호 (변경발급 및 재발급 시 기재)	
	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 연월일 (변경발급 및 재발급 시 기재)	
	신청사유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3(제24조의4)에 따라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지정검사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위험물운송적합증(철어 못 쓰게 된 경우 및 변경발급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제 호

위험물운송적합증

선박의 종류 및 명칭		선박번호	
선적항		선박소유자	
위험물의 분류 또는 항목		위험물의 적재장소	

위 선박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험물을 적재장소에 적재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지정검사기관의 장)



■ 위험물 선박운송 저장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3.24>

제 호
Certificate No. _____

위험물적재검사증(신청서)

Stowage Certificate of Dangerous Goods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선박 Ship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Shipowner's Name & Address			1	
	선박명차 Ship's Name and Voyage No.	2	선적항 및 선박국적 Port of Registry & Nationality	3	
	선박번호 Official No.	4	항행구역 Navigation Area	5	
	총톤수 Gross Tonnage	6	선박의 용도 Kind of Ship	7	
	적재항 및 출항예정일 Port of Loading & Sailing on/about	8	양하항 및 도착예정일 Port of Discharging & Arrival on/about	9	
위험물 Dangerous Goods	포장의 수량 및 종류, 품명, 유엔번호 및 분류 Number, Kind and Quantity of Packages, Proper Shipping Name, UN No. & Class/Division		10	적재장소 Location of Loading	11
검사받을	장소	일시			
	성명 또는 명칭				
신청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검사담당자	전화번호			

위 위험물을 운송하고자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4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지정검사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1. 포장명세서 1부 2. 화물송장 1부	수수료 없음
------	---------------------------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4조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We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Dangerous Goods have passed our stowage inspection under the provision of the Paragraph 1, Article 204 of the Regulation for the Carriage and Storage of Dangerous Goods by Ships,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Y M D

Date:

지방해양수산청장
지정검사기관의 장
(한글 및 영문)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3.10.>

제 호
Certificate No. _____

위험물컨테이너(자동차) 수납검사증(신청서)
Container (Vehicle) Packing Certificate of Dangerous Goods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송하인 Shipper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Shipper's Name & Address			1		
수하인 Consignee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Consignee's Name & Address			2		
컨테이너 (자동차) Container (Vehicle)	컨테이너 번호 (자동차 번호) Container(Vehicle) No.	3	총중량 Total Weight of Container(Vehicle)	4		
	크기 및 종류 Size & Type of Container(Vehicle)	5	혼적화물의 품명 및 수량 Description & Q'ty other than Dangerous Goods	6		
선박 Ship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Shipowner's Name & Address	7	선박명 및 항차 Ship's Name and Voyage No.	8		
	적재항 및 출항예정일 Port of Loading & Sailing on/about	9	양하항 및 도착예정일 Port of Discharge & Arrival on/about	10		
위험물 Dangerous Goods	화물표시 Marks & Nos.	11	포장의 수 및 종류와 위험물의 명세 Number and Kind of Packages and Description of Dangerous Goods	12	총중량 / 순중량 / 용적 Gross Wt/Net Wt/ m'	13
	비고 Additional Information				14	
	긴급 상황 발생 시 연락처 Emergency Communication				15	
검사받을	장소	일시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검사담당자	전화번호				

위 위험물을 운송하고자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5조제1항(제27조제6항) 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지정검사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1. 포장명세서 1부 2. 화물송장 1부	수수료 없음
------	---------------------------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5조제1항(제27조제6항) 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We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Dangerous Goods in the said container(vehicle) have passed our inspection under the provision of the Paragraph 6, Article 27, Paragraph 1 Article 205, or Paragraph 9 Article 205 of the Regulation for the Carriage and Storage of Dangerous Goods by Ships and provisions of IMDG Code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Y M D
Date:

지방해양수산청장
지정검사기관의 장
(한글 및 영문)

직인

위험물용기검사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위험물용기	종 류		
	재 질		
제조번호		수 량	
	형 식		
	표 시		
검사를 받으려는 장소 및 일자			
제 조 자	명 칭		
	주 소		

위험물 운송용기에 대하여 검사를 받고자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지정검사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표시방법을 정한 서류 2. 용기의 구조도면 및 재료에 관한 설명서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제 호
Certificate No. _____

위험물용기검사증

CERTIFICATE OF INSPECTION FOR PACKAGING CONTAINING DANGEROUS GOODS

위험물용기 Packaging	종류(기호) Kind	
	재질 Material	
	형식 Type	
	제조번호 Mfg. No.	
	검사수량 Quantity Inspected	
	표시 Marking	
제조사 Manufacturer	성명 또는 법인명 Name	
	주소 Address	
비고 Remark		

위 용기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5조의2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We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packagings have passed our inspection under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205-2 of the Regulation for the Carriage and Storage of Dangerous Goods by Ships and the provisions of IMDG Code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Y M D

지방해양수산청장
Administrator of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지정검사기관의 장
Chief of the Designated Inspection Authority

직인

화약류분류승인서 발급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14일
송하인	성명 또는 명칭 Name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Address (전화번호)	
포장명세	내용기 Inner Packagings	
	중간용기 Intermediate Packagings	
	외용기 Outer Packagings	
	추가 포장요건 또는 포장방법 Additional packing instructions or packing method	
분류확인	분류 업체 또는 기관 Classification approval	
	시험/분석/정의 등의 분류 근거 Classification made by test/analogy/definition	

화약류 명세 Description of explosives

항목 번호 Item No:	제품명 Market name of explosives	품명 Proper Shipping Name	국제연합 번호 UN Number	등급 Division	포장요건 Packaging requirements	특별사항 Special Packing	순화약 질량 Net explosive mass (kg)	부품/재 고 번호 Part /Stock number	제조사 성명 및 주소(다른 경우) Name and address of manufacturer (where different)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9조의2에 따라 화약류분류승인서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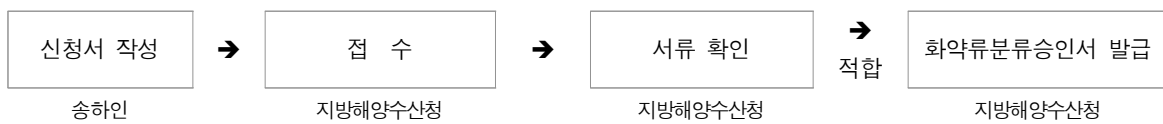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지정검사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소속의 위험물운송 전문가 위원회(UNTDG)가 개발한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에서 정한 시험기준에 따른 화약류 분류 시험결과 또는 방위사업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한 화약류의 국제연합번호가 기재된 서류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경찰청장의 허가서류 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출 허가 결과 서류 또는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의 수출 허가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제 호
Approval No. _____

쪽 번호 /
Page No. _____

화약류분류승인서

Competent Authority Classification Approval Document of Explosives

1 주무관청 Competent authority	참조문서 번호 Document Reference
2 국가규정 Modal or national regulations:	
3 분류업체 또는 기관 Classification approval:	
4 승인받은 업체(송하인)의 명칭과 주소 Name and address of approval holder:	
5 내장용기, 중간용기 및 외장용기 등 포장명세 Packaging description including inner packagings, intermediate packagings, and outer packagings:	
6 추가 포장요건 또는 포장방법 Additional packing instructions or packing method description:	
7 시험/분석/정의 등의 분류 근거 Classification made by test / analogy / definition	
8 특별 조건 또는 제한사항 Special conditions or limitations:	
이 문서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9조의2제1항 및 IMDG Code 제2.1.3.6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주무관청에서 승인 및 발급하였습니다. This document has been approved in accordance with 2.1.3.6 of the IMDG Code by the Competent Authorit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주무관청의 승인 책임자 성명 Name of authorizing person of the Competent Authority 발행일자 Date of Issue: 지방해양수산청장 지정검사기관의 장 (한글 및 영문) 직인	

제 호
Approval No. _____

쪽 번호 /
Page No. _____

항목 번호 Item No:	제품명 Market name of explosives	품명 Proper Shipping Name	국제연 합번호 UN Number	등급 Divisio n	포장요건 Packaging requiremen ts	특별 사항 Special Packing	순화약 질량 Net explosi ve mass (kg)	부품/ 재고 번호 Part /Stock number	제조사 성명 및 주소(다를 경우) Name and address of manufacturer (where different)

표찰(제6조제1항 및 제33조 관련)

1. 정표찰(正標札)

가. 규격: ℓ (리터)는 0.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컨테이너·자동차 및 대형금속용기에 붙이는 정표찰은 1.25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형상

정표찰 1		정표찰 1.4		정표찰 1.5		정표찰 1.6	
							
구분	색상	구분	색상	구분	색상	구분	색상
바탕	주황색	바탕	주황색	바탕	주황색	바탕	주황색
그림	흑색	숫자	흑색	숫자	흑색	숫자	흑색
숫자	흑색	문자	흑색	문자	흑색	문자	흑색
문자	흑색	*는 격리구분을 표시		*는 격리구분을 표시		*는 격리구분을 표시	
**는 등급을 표시 *는 격리구분을 표시							

정표찰 2.1 (선택가능)	
	
구분	색상
바탕	적색
그림	흑색
숫자	흑색

정표찰 2.2 (선택가능)	
	
구분	색상
바탕	적색
그림	백색
숫자	백색

정표찰 2.2 (선택가능)	
	
구분	색상
바탕	초록색
그림	흑색
숫자	흑색

정표찰 2.2 (선택가능)	
	
구분	색상
바탕	초록색
그림	백색
숫자	백색

정표찰 2.3	
	
구분	색상
바탕	백색
그림	흑색
숫자	흑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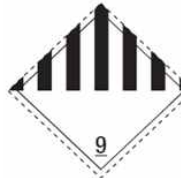
정표찰 3 (선택가능)	
	
구분	색상
바탕	적색
그림	흑색
숫자	흑색

	
구분	색상
바탕	적색
그림	백색
숫자	백색

정표찰 4.1	
	
구분	색상
바탕	적색
띠	백색
그림	흑색
숫자	흑색

정표찰 4.2		
		
구분		색상
바탕	위	백색
	아래	적색
그림		흑색
숫자		흑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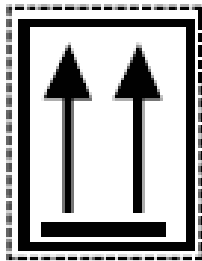
정표찰 4.3 (선택가능)				정표찰 5.1		정표찰 5.2 (선택가능)			
									
구분	색상	구분	색상	구분	색상	구분	색상	구분	색상
바탕	청색	바탕	청색	바탕	노랑색	바탕	위	적색	적색
그림	흑색	그림	백색	그림	흑색		아래	노랑색	노랑색
숫자	흑색	숫자	백색	숫자	흑색	그림		그림	백색
						숫자		숫자	흑색

정표찰 6.1		정표찰 6.2		정표찰 8		정표찰 9	
							
구분	색상	구분	색상	구분	색상	구분	색상
바탕	백색	바탕	백색	바탕	백색	바탕	백색
그림	흑색	그림	흑색		흑색		흑색
숫자		숫자		숫자		숫자	
흑색		흑색		백색		흑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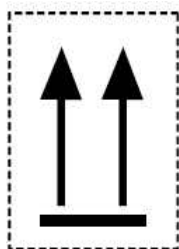
정표찰 9A	
구분	색상
바탕	백색
띠	흑색
그림	흑색
숫자	흑색
※ 리튬배터리 용기 또는 포장에 부착하는 정표찰이며 컨테이너 부착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부표찰(副標札)

가. 직립 부표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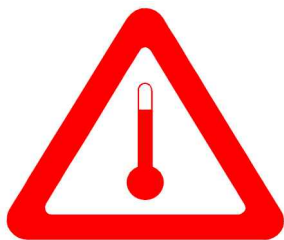


또는



구분	색상
바탕	백색
그림	흑색 또는 적색
※ 이 부표찰의 크기는 용기의 크기에 어울리게 할 것	
※ 외곽 띠는 선택사항임	

나. 고온주의 부표찰



구분	색상
바탕	백색
그림	적색
외곽 띠	적색

※ 이 부표찰은 정삼각형으로서 각 변은 2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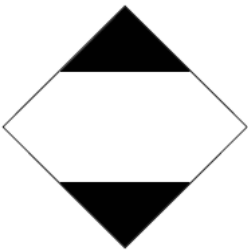
다. 해양오염물질 부표찰



구분	색상
바탕	백색
그림	흑색

- ※ 용기·포장에 붙이는 부표찰은 100밀리미터 ×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컨테이너·자동차 및 대형금속용기에 붙이는 부표찰은 250밀리미터 × 2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 ※ 다이아몬드를 이루는 선의 최소 폭은 2밀리미터로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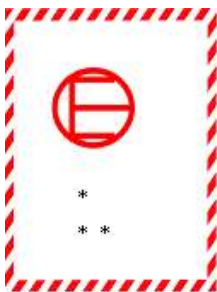
라. 소량의 위험물 부표찰



구분		색상
바탕	위	흑색
	중간	백색
	아래	흑색

- ※ 용기·포장에 붙이는 부표찰은 100밀리미터 ×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 ※ 다이아몬드를 이루는 선의 최소 폭은 2밀리미터로 할 것
- ※ 만약 포장화물의 크기가 작다면 이 표시가 명확하게 보이는 것을 조건으로 50밀리미터 × 50밀리미터 이상의 크기로 축소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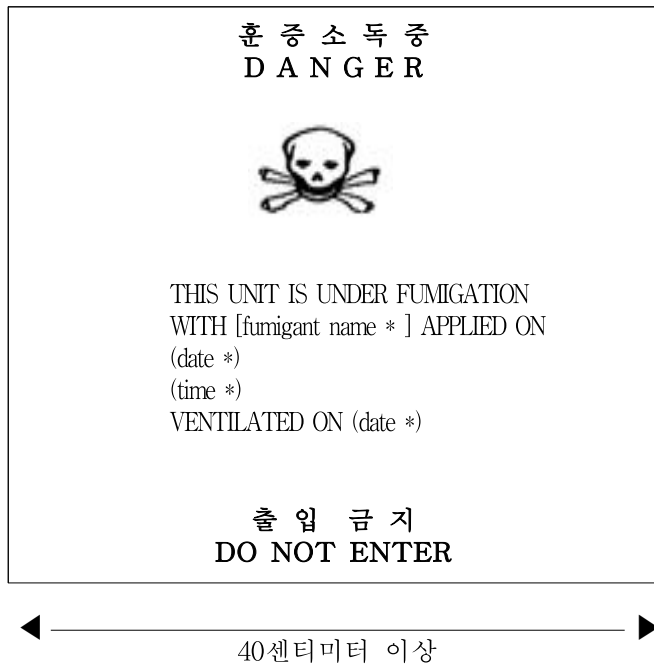
마. 극소량의 위험물 부표찰



구분	색상
바탕	백색
그림	흑색 또는 적색
* 에는 위험물의 등급을 나타내야 함 ** 에는 화주 또는 송하인의 명칭이 포장화물의 다른 곳에 나타나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명칭을 나타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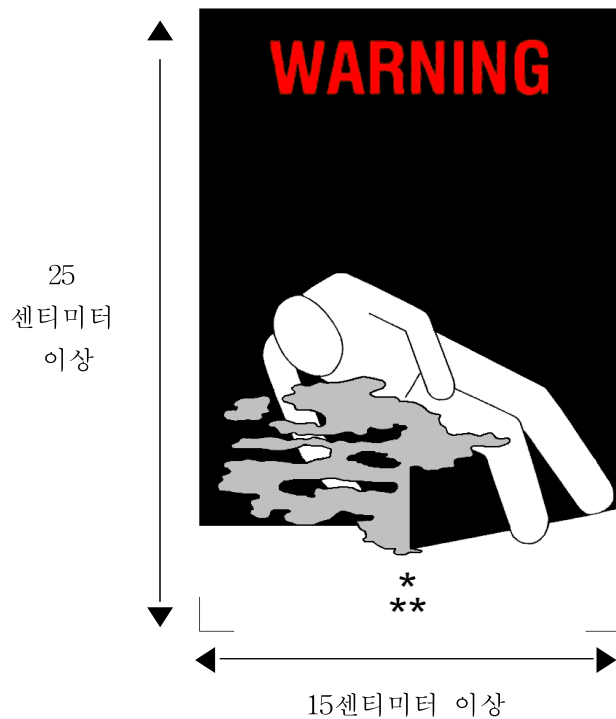
- ※ 용기·포장에 붙이는 부표찰은 100밀리미터 ×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바. 훈증소독주의 부표찰



구분	색상
바탕	백색
그림	흑색
문자	흑색
*에는 훈증소독약품의 명칭, 훈증소독을 한 날짜·시간 및 환기를 한 날짜를 각각 적을 것	
※ 훈증소독주의 부표찰을 이루는 선의 최소 폭은 2밀리미터로 할 것	

사. 냉각제 주의 부표찰



구분	색상
경고문자	적색 또는 백색
바탕	흑색
사람	백색
연기	회색
*에는 냉각제의 제품명을 한 줄로 적을 것 **에는 "AS COOLANT" 또는 "AS CONDITIONER" 문자를 적을 것	
※ 글자의 높이는 25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아. 리튬배터리 부표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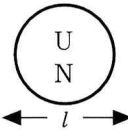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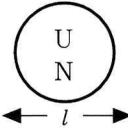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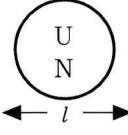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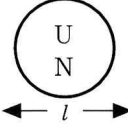


구분	색상
바탕	백색
그림	흑색
테두리 빛금무늬	적색
*에는 국제연합번호를 적을 것 **에는 추가정보를 위한 전화번호를 적을 것	

※ 표찰은 폭 120밀리미터, 높이 11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테두리 빛금무늬의 폭은 5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포장화물 크기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치수를 폭 105밀리미터, 높이 74밀리미터 이상으로 축소할 수 있다.

용기 및 포장의 표시(제205조의2제3항 관련)

1. 소형용기의 표시

용기의 구분	표시 방법
신제품	 (a)/(b)(c)/(d)/(e) ROK/(f)
재생용기	 (a)/(b)(c)/(d) ROK/(g)/(h)RL
개조용기	 (a)/(b)(c)/(d)/(e) ROK/(i)
제6.2급 용기	 (a)(a')/Class 6.2/(e) ROK/(f)

※ 비 고

- "(a)"는 용기 및 포장의 종류·재질 및 분류를 표시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호로 한다. 다만, 회수용기·V표시 용기 및 W표시 용기의 경우에는 이 기호 다음에 각각 영문자 "T", "V" 및 "W"를 추가한다.
- "(b)"는 수납할 수 있는 위험물의 용기 등급을 표시하며 수납할 수 있는 위험물의 용기등급별로 다음 표의 기호로 한다. V표시 용기의 경우에는 "X"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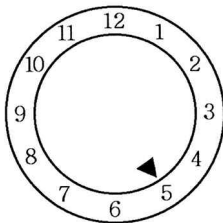
기 호	수납할 수 있는 위험물의 용기등급
X	1, 2 또는 3
Y	2 또는 3
Z	3

- "(c)"는 단일용기로서 액체를 수납하는 것은 수납할 수 있는 액체의 비중을 표시하고(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반올림하고 비중이 1.2 이하의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음), 결합용기 또는 단일용기로서 고체를 수납하는 것에 있어서는 허용질량을 킬로그램으로 표시한 수치로 한다. 다만, V표시 용기에 있어서는 용기·포장검사 기준의 낙하시험에 사용한 내장용기의 총질량의 1/2에 외장용기(완충재 및 흡수제를 포함)의 질량을 더한 총질량을 킬로그램으로 표시한 수치로 한다.
- "(d)"는 결합용기 또는 단일용기로서 고체를 수납하는 것은 기호 "S"로 하고, 단일용기로서 액

체를 수납하는 것은 용기·포장검사기준의 내압시험 압력을 10킬로파스칼 단위로 반올림하여 표시한 수압시험치로 한다.

5. "(e)"는 제조년(서기 연으로 끝 두 자리를 표기한다. 이하 같다) 및 제조월(외장으로 플라스틱 드럼이나 플라스틱 제리칸을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조월은 다음에 따라 표시하고, 다른 표시와 구분되는 곳에 붙이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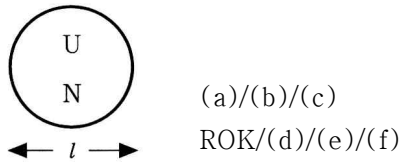
예) 제조월이 5월인 경우



6. "(f)"는 제조자의 명칭 또는 주관청이 정한 표시로 한다.
7. "(g)"는 재생을 한 업체의 명칭 또는 약호
8. "(h)"는 재생을 한 연도
9. "(i)"는 개조작업을 한 업체의 명칭 또는 약호
10. "L"의 문자는 단일용기로서 액체를 수납하는 용기 및 포장으로 기밀시험에 합격한 것에만 표시한다.
11. "ℓ"는 1.2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30리터 또는 30킬로그램 이하 포장용기인 경우에는 그 높이가 0.6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5리터 또는 5킬로그램 이하 포장용기인 경우에는 용기의 크기에 어울리게 표시하여야 한다.
12. "(a')"는 종류와 관계없이 내장용기를 수납할 수 있는 경우에 "U"를 표시한다.
13. 다음 요건에 따라야 한다.
 - 가. 용기의 총질량이 3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윗면 또는 동체에 표시할 것
 - 나. 표시되는 문자, 숫자는 1.2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30리터 또는 30킬로그램 이하 포장용기인 경우에는 그 높이가 0.6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5리터 또는 5킬로그램 이하 포장용기인 경우에는 용기의 크기에 어울리게 표시하여야 한다.
 - 다. 용량이 100리터 이상의 금속드럼 외의 재생공정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용기는 (a)부터 (e)까지에 기재된 내용을 영구적인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 "영구적인 형태"란 재생공정에 견딜 수 있는 표시(예를 들면, 양각)를 말한다. 용량이 100리터를 초과하는 금속드럼 외의 포장용기인 경우, 이 영구적인 형태의 표시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제 6.1.3.1항에 규정된 내구성 있는 표시로 대체할 수 있다.
 - 라. 허용용량이 100리터를 초과하는 금속드럼의 아랫면에는 (a)부터 (e)까지의 문자 또는 숫자 및 동체의 판 두께(드럼의 윗면 또는 아랫면의 판 두께가 동체의 판 두께보다 얇은 경우에는 윗면, 동체 및 아랫면의 판 두께를 0.1밀리미터 단위로 표시하는 수치)를 양각 등 영구적인 방법으로 표시할 것
 - 마. 반복적으로 재사용하는 금속드럼에 있어서 "ROK" 및 (f)의 문자 또는 숫자를 양각 등 영구적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중형산적용기의 표시

가. 검사표시



※ 비 고

1. "(a)"는 용기 및 포장의 종류, 재질 및 분류를 표시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호로 한다.
2. "(b)"는 수납할 수 있는 위험물의 용기등급을 표시하며 수납할 수 있는 위험물의 용기등급별로 다음 표의 기호로 한다.

기 호	수납할 수 있는 위험물의 용기등급
X	1, 2 또는 3
Y	2 또는 3
Z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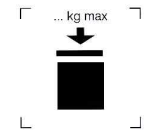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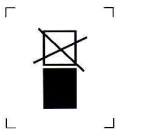
3. "(c)"는 제조월과 제조년을 표시한다.
4. "(d)"는 제조자의 명칭 또는 주관청이 정한 표시로 한다.
5. "(e)"는 용기·포장검사 기준에서 용기의 윗면에 가하는 하중을 나타낸다. 그러나 겹침 적재를 위한 구조가 아닌 것은 "0"으로 한다.
6. "(f)"는 허용질량을 킬로그램으로 표시한 수치로 한다.
7. " ℓ "는 1.2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8. 글자 및 숫자의 크기는 1.2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9. 금속 중형산적용기에 스탬프로 찍거나 각인하는 경우에는 유엔 포장용기 심벌 표시 대신에 대문자 "UN"으로 표시할 수 있다.

나. 시험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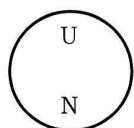
용 기 종 류	표 시 내 용
금속 중형산적용기	겹쳐 20도에서의 내용적(리터) 용기의 질량(킬로그램) 최근의 기밀시험일(연 및 월)(시험을 마친 용기만 해당한다) 최근의 시험일(연 및 월) 최대 충전압력 및 배출압력(킬로파스칼)(압력으로 충전 또는 배출하는 것만 해당한다) 외판의 최소두께(밀리미터) 제조번호 최대허용 겹침적재하중
경질플라스틱 중형산적용기	겹쳐 20도에서의 내용적(리터) 용기의 질량(킬로그램)

	시험압력(킬로파스칼)(시험을 행한 용기만 해당한다) 최대 충전 및 배출압력(킬로파스칼)(압력으로 충전 또는 배출하는 것만 해당한다) 최근의 기밀시험일(연 및 월)(시험을 마친 용기만 해당한다) 최근의 시험일(연 및 월) 최대허용 겹침적재하중
플라스틱내용기 복합 중형산적용기	섬씨 20도에서의 내용적(리터) 용기의 질량(킬로그램) 시험압력(킬로파스칼)(시험을 행한 용기에 한한다) 최대 충전 및 배출압력(킬로파스칼)(압력으로 충전 또는 배출하는 것만 해당한다) 최근의 기밀시험일(년 및 월)(시험을 행한 용기만 해당한다) 최근의 시험일(연 및 월) 최대허용 겹침적재하중
화이버 보드 (FIBER BOARD) 중형산적용기	용기의 질량(킬로그램) 최대허용 겹침적재하중
목재 중형산적용기	용기의 질량(킬로그램) 최대허용 겹침적재하중
비 고: 이 시험표시는 가목의 검사표시에 추가하여 용기의 바깥쪽 면에 표시할 것	

다. 최대허용 겹침적재하중 기호

	
겹침적재 가능한 중형산적용기	겹침적재할 수 없는 중형산적용기
비고: 최대허용 겹침적재하중 기호의 치수는 100밀리미터 × 100밀리미터 이상이고, 질량을 나타내는 숫자, 글자의 높이는 12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또는 기호는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3. 대형용기의 표시



(a)/(b)/(c)
ROK/(d)/(e)/(f)

※ 비 고

1. "(a)"는 용기 및 포장의 종류, 재질 및 분류를 표시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호로 한다.
다만, W표시용기의 경우에는 이 기호 다음에 영문자 "W"를 추가한다.
2. "(b)"는 수납할 수 있는 위험물의 용기등급을 표시하며, 수납할 수 있는 위험물의 용기등급별로 다음 표의 기호로 한다.

기 호	수납할 수 있는 위험물의 용기등급
X	1, 2 또는 3
Y	2 또는 3
Z	3

3. "(c)"는 제조월과 제조년을 표시한다.
4. "(d)"는 제조자의 명칭·상호 또는 주관청이 정한 식별기호로 한다.
5. "(e)"는 용기·포장검사기준에서 용기의 윗면에 가하는 하중을 나타낸다. 그러나 겹침 적재를 위한 구조가 아닌 것은 "0"으로 한다.
6. "(f)"는 허용질량을 킬로그램으로 표시한 수치로 한다.

4. 대형금속용기의 표시

가. 제2급 이외의 위험물 수납용 대형금속용기의 표시

- 1) 소유자 정보: 소유자 등록번호
- 2) 제조자 정보
 - 가) 제조국명
 - 나) 제조 연도
 - 다) 제조자 명칭 또는 기호
 - 라) 제조자 일련번호
- 3) 승인정보

가) 유엔 포장용기 표시:



※ 대형금속용기에 스탬프로 찍거나 각인하는 경우에는 유엔 포장용기 심벌 표시 대신에 대문자 "UN"으로 표시할 수 있다.

나) 승인국가명

다) 설계승인 허가단체명

라) 설계승인번호

마) 국제기준과 동등한 기준으로 승인된 기준에 따른 설계라면 "AA" 문자

바) 동체 설계 압력용기기준

4) 압력

가) 최대허용사용압력(MAWP)(bar 또는 kPa)

나) 시험압력(bar 또는 kPa)

다) 최초 압력시험 일자(연도 및 월)

라) 최초 압력시험 입회자 확인표시

마) 외부설계압력 (bar 또는 kPa)

바) 가열/냉각장치의 최대허용사용압력(MAWP)(bar 또는 kPa)(해당하는 경우에만 표시한다)

5) 온도

가) 설계온도범위(℃)

6) 재료

가) 동체 재료 및 재료표준기준

나) 기준강재에 상응하는 두께(mm)

다) 라이닝(lining) 재료(해당하는 경우에만 표시한다)

7) 용량

가) 20℃에서의 탱크 수용량(리터)

이 표시는 동체가 7,500리터 이하의 구획이 요동 방지판으로 나누어졌으면 "S" 문자를 표시할 것

나) 20℃에서 각 구획실의 수용량(리터)(다중구획 탱크인 경우)

이 표시는 동체가 7,500리터 이하의 구획이 요동 방지판으로 나누어졌으면 "S" 문자를 표시할 것

8) 정기검사 및 시험

가) 가장 최근의 정기시험 종류(2.5년, 5년 또는 임시검사)

- 나) 가장 최근의 정기시험 일자(연도 및 월)
- 다) 가장 최근 정기시험의 시험압력(bar 또는 kPa)
- 라) 가장 최근의 시험을 실시하거나 입회한 단체의 확인표시

9) 대형금속용기 정보

- 가) 사용자명
- 나) 최대허용총질량(MPGM)(kg)
- 다) 공차 질량(kg)
- 라) 대형금속용기표

나. 제2급 중 비냉동액화가스 수납용 대형금속용기의 표시

- 1) 소유자 정보: 소유자 등록번호
- 2) 제조자 정보
 - 가) 제조국명
 - 나) 제조 연도
 - 다) 제조자 명칭 또는 기호
 - 라) 제조자 일련번호
- 3) 승인정보

가) 유엔 포장용기 표시:



- 나) 승인국가명
- 다) 설계승인 허가단체명
- 라) 설계승인번호
- 마) 국제기준과 동등한 기준으로 승인된 기준에 따른 설계라면 "AA" 문자
- 바) 동체 설계 압력용기기준

4) 압력

- 가) 최대 허용사용압력(MAWP)(bar 또는 kPa)
- 나) 시험압력(bar 또는 kPa)
- 다) 최초 압력시험 일자(연도 및 월)
- 라) 최초 압력시험 입회자 확인표시
- 마) 외부설계압력(bar 또는 kPa)

5) 온도

- 가) 설계온도범위(℃)
- 나) 설계기준온도(℃)
- 6) 재료
 - 가) 동체 재료 및 재료표준기준
 - 나) 기준강재에 상응하는 두께(mm)
- 7) 용량: 20℃에서의 탱크 수용량(리터)
- 8) 정기검사 및 시험
 - 가) 가장 최근의 정기시험 종류(2.5년, 5년 또는 임시검사)
 - 나) 가장 최근의 정기시험 일자(연도 및 월)
 - 다) 가장 최근 정기시험의 시험압력(bar 또는 kPa)
 - 라) 가장 최근의 시험을 실시하거나 입회한 단체의 확인표시
- 9) 대형금속용기 정보
 - 가) 사용자명
 - 나) 운송이 허용된 비냉동액화가스품명
 - 다) 운송이 허용된 각 비냉동액화가스별 최대허용하중(kg)
 - 라) 최대 허용총질량(MPGM)(kg)
 - 마) 공차 질량(kg)
 - 바) 대형금속용기표

다. 제2급 중 냉동액화가스 수납용 대형금속용기의 표시

- 1) 소유자 정보: 소유자 등록번호
- 2) 제조자 정보
 - 가) 제조국명
 - 나) 제조 연도
 - 다) 제조자 명칭 또는 기호
 - 라) 제조자 일련번호
- 3) 승인정보

가) 유엔 포장용기 표시:



- 나) 승인국가명
- 다) 설계승인 허가단체명
- 라) 설계승인번호

- 마) 국제기준과 동등한 기준으로 승인된 기준에 따른 설계라면 "AA" 문자
 - 바) 동체 설계 압력용기기준
- 4) 압력
 - 가) 최대 허용사용압력(MAWP)(bar 또는 kPa)
 - 나) 시험압력(bar 또는 kPa)
 - 다) 최초 압력시험 일자(연도 및 월)
 - 라) 최초 압력시험 입회자 확인표시
- 5) 온도: 최저설계온도(℃)
- 6) 재료
 - 가) 동체 재료 및 재료표준기준
 - 나) 기준강재에 상응하는 두께(mm)
- 7) 용량
 - 가) 20℃에서의 탱크 수용량(리터)
- 8) 단열
 - 가) "단열" 또는 "진공단열"
 - 나) 단열장치의 유효성(열 유입량)(Watt)
- 9) 압력유지시간
 - 가) 냉동액화가스의 완전한 명칭
 - 나) 기준 압력유지시간(일 또는 시간)
 - 다) 최초압력(bar 또는 kPa)
 - 라) 충전율(kg)
- 10) 정기검사 및 시험
 - 가) 가장 최근의 정기시험 종류(2.5년, 5년 또는 임시검사)
 - 나) 가장 최근의 정기시험 일자(연도 및 월)
 - 다) 가장 최근의 시험을 실시하거나 입회한 단체의 확인표시
- 11) 대형금속용기 정보
 - 가) 사용자명
 - 나) 운송되는 냉동액화가스품명 및 최저평균화물온도
 - 다) 최대허용충질량(MPGM)(kg)
 - 라) 공차 질량(kg)
 - 마) 운송되는 가스의 실제 압력유지시간(일 또는 시간)
 - 바) 대형금속용기표

5. 압력용기의 표시

용기의 구분	표 시 방 법
재충전압력용기	 (i)/(j)/(k)/(m)/(q)/(r) (d)/(e)/(f)/(g)/(h) (a)/ROK/(b)/(c)
비충전압력용기	 (j)/(k)/(m) (d)/(e)/(g) (a)/ROK/(b)/(c)

※ 비 고

- "(a)"는 설계·구조 및 시험에 적용된 기술표준(국제표준기구 기준 등)을 표시한다.
 - "(b)"는 주관청에 등록된 지정검사기관의 약호 또는 도장을 표시한다.
 - "(c)"는 최초 검사일을 연도(4자리) 및 월(2자리)로 표시하며 "/"로 구분한다.
 - "(d)"는 압축가스, 용해된 UN 1001 아세틸렌 및 용제 없는 UN 3374 아세틸렌을 운송하는 압력용기의 적용압력(bar)을 표시하며 "PW"를 앞에 붙인다.
 - "(e)"는 시험압력을 표시하며 "PH"를 압력 앞에 붙이고 "BAR"를 압력 뒤에 붙인다.
 - "(f)"는 영구히 부착된 부분을 포함한 빈 압력용기의 질량을 세 자리 숫자로 표기하며 단위는 "KG"으로 한다. 다만, 1킬로그램 이하의 실린더는 두 자리 숫자로 표시한다.
 - "(g)"는 액화가스의 경우 세 자리 숫자로 수용량을 "L"로 표시한다.
 - "(h)"는 압력용기의 최소표준벽 두께를 "MM"로 표시한다.
 - "(i)"는 실린더 나사의 식별기호를 표시한다.
 - "(j)"는 주관청에 등록된 제조자기호를 표시한다.
 - "(k)"는 제조자의 일련번호(SERIAL NUMBER)를 표시한다. 다만, 비충전압력용기의 경우에는 배치번호(BATCH NUMBER)로 대신할 수 있다.
 - "(m)"은 강제압력용기 및 수소 발생 위험성이 있는 가스운송용으로 강제 라이너(LINER)가 있는 복합압력용기에 대하여 강제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H"를 표시한다.
 - "L"은 압력용기의 지름이 14센티미터 이상이면 1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14센티미터 이하이면 0.5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 "(q)" 설계수명이 한정된 복합압력용기의 경우에는 문자 "FINAL"다음에 설계수명을 연도를 나타내는 4자리 숫자와 월을 나타내는 2자리 숫자를 빗금 "/"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 "(r)" 설계수명이 15년보다 길게 한정된 복합압력용기와 설계수명이 무제한인 복합압력용기의 경우에는 문자 "SERVICE" 다음에 제조일(최초검사)로부터 15년에 해당하는 일자를 연도를 나타내는 4자리 숫자와 월을 나타내는 2자리 숫자를 빗금 "/"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16. 표시는 다음 요건에 따라야 한다.
- 가. 숫자, 문자는 보기 쉽도록 하며 양각 등의 영구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 나. 숫자, 문자의 크기는 압력용기의 경우 지름이 14센티미터 이상이면 0.5센티미터 이상으로, 14센티미터 이하이면 0.2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비충전압력용기의 경우 0.5센티미터 이상의 크기 및 높이로 "재충전 금지(DO NOT REFILL)"의 문구를 표시한다.
 - 다. 재충전압력용기는 최종 정기검사일(연도 및 월) 및 지정검사기관의 영문 약호를 표시한다.

6. 집합형압력용기의 표시

가. 소유자 정보: 소유자 등록번호

나. 제조자 정보

- 1) 제조국명
- 2) 제조 연도
- 3) 제조자 명칭 또는 기호
- 4) 제조자 일련번호

다. 승인정보

1) 유엔 포장용기 표시:



- 2) 승인국가명
- 3) 설계승인 허가단체명
- 4) 설계승인번호
- 5) 국제기준과 동등한 기준으로 승인된 기준에 따른 설계라면 "AA" 문자

라. 압력

- 1) 시험압력(bar 또는 kPa)
- 2) 최초 압력시험 일자(연도 및 월)
- 3) 최초 압력시험 입회자 확인표시

마. 온도: 설계온도범위(℃)

바. 구성용기/용량

- 1) 구성용기수
- 2) 총수용량(리터)

사. 정기검사 및 시험

- 1) 가장 최근의 정기시험 종류(5년 또는 임시검사)
- 2) 가장 최근의 정기시험 일자(연도 및 월)
- 3) 가장 최근의 시험을 실시하거나 입회한 단체의 확인표시

아. 대형금속용기 정보

- 1) 사용자명
- 2) 최대허용하중(kg)

- 3) 15℃에서의 작업압력(bar)
- 4) 최대허용총질량(MPGM)(kg)
- 5) 공차 질량(kg)

7. 금속수소화물 저장장치의 표시

가. 표시의 크기

금속수소화물 저장장치의 크기 (최소길이)	유엔 포장용기 표시의 크기 (지름)	그 이외의 표시의 크기 (높이)
140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5밀리미터
140밀리미터 미만	5밀리미터	2.5밀리미터

나. 표시의 종류

- 1) 유엔 포장용기 표시:



- 2) ISO 16111 (설계, 제조 및 시험에 사용된 기술 표준규정)
- 3) 승인국 판별 문자(국제 자동차 구별기호로 표시함)
- 4) 표시를 허가한 국가의 주무관청에 등록된 검사기관의 판별 표시 또는 스탬프(stamp)
- 5) 최초 검사 일자. 연도(年度)를 나타내는 4자리 숫자와 월(月)을 나타내는 2자리 숫자를 빗금(/)으로 분리하여 표시(즉, "연도/월")
- 6) 용기의 시험압력(단위: bar). 시험압력 앞에는 "PH" 문자를 표시하며, 시험압력 뒤에는 "BAR" 문자를 표시함.
- 7) 금속수소화물 저장장치의 정격 충전압력(단위: bar). 충전압력 앞에는 "RCP" 문자를 표시하며, 충전압력 뒤에는 "BAR" 문자를 표시함.
- 8) 제조자(위험물용기검사증에 기재된 제조자를 말한다) 표시. 제조국과 승인국이 같지 아니 할 때에는 제조국을 판별하는 문자(국제자동차 구별기호로 표시) 다음에 제조자 표시를 할 것. 제조국 표시와 제조자 표시는 빈칸이나 빗금(/)을 사용하여 분리할 것
- 9) 제조자가 배정한 일련번호

10) 강재의 호환성을 나타내는 "H" 문자. 강재로 라이닝(lining)이 있는 강제용기 및 복합용기에만 표시함(ISO 11114-1:1997을 참조할 것)

11) "FINAL"이라는 문자 다음에 만기 일자를 연도(年度)를 나타내는 4자리 숫자와 월(月)을 나타내는 2자리 숫자를 빗금(/)으로 분리하여 표시(즉, "연도/월"). 한정된 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금속수소화물 저장장치에만 표시함.

비고: 상기 1)부터 5)까지에 명시된 증명표시는 주어진 순서에 따라 연속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정격 충전압력 7) 바로 다음에 시험압력 6)을 표시하여야 한다. 상기 8)부터 11)까지에 명시된 제조자 표시는 주어진 순서에 따라 연속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8. 회수용기 및 회수압력용기의 표시

가. 회수용기 및 회수압력용기에는 "SALVAGE" 문자를 표시하여야 하며 문자의 높이는 12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6.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26. (현행과 같음) <u>27. "중합성(重合性)물질"이란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더 큰 분자 또는 중합체(重合體)를 형성하여 강한 발열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u>
<u><신설></u>	<u>28. "덧포장(OVERPACK)"이란 운송 중 취급과 적재의 편의를 위하여 1개 이상의 포장화물을 하나의 단위(UNIT)로 추가 포장한 것으로 단일 송하인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u>
<u><신설></u>	<u>29. "회수압력용기"란 손상이나 결함이 있거나 부적합한 상태의 압력용기를 회수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운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압력용기를 말하며, 수용량이 3,000리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u>

[illegible]

에는 제6조의 표시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표찰·품명·국제연합번호·순화약질량 및 총질량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생략) 2. 위험물을 적재하는 항만을 관할하는 <u>지방해양항만청장(해양사무소장)</u>을 포함한다. 이하 "<u>관할지방해양항만청장등</u>"이라 한다)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 ----- ----- -----. 1. (현행과 같음) 2. ----- ----- <u>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u>----- -- "<u>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u>"----- -----
제12조(적재방법의 특례) ① (생략) ② 위험물을 바다에 폐기하기 위하여 운송하는 경우와 그 밖에 제6조의 적재방법 외의 다른 방법으로 운송하려는 경우로서 <u>관할지방해양항만청장등</u>이 승인한 경우에는 그 다른 방법에 따라 위험물을 적재할 수 있다.	제12조(적재방법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u>----- ----- -----.
제16조(위험물 명세서 등) ① ~ ⑤ (생략) ⑥ 해당 위험물이 해양오염물질, 폐기물, 소량의 위험물 또는 극소량의 위험물인 경우에는 관련서류에 각각 "해양오염물질	제16조(위험물 명세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MARINE POLLUTANT)" 또는 "해양오염물질/환경유해물질 (MARINE POLLUTANT/ENVIRONMENT HAZARDOUS)", "폐기물(WASTE)", "소량의 위험물(limited quantity 또는 LT D QTY)" 또는 "극소량의 위험물(dangerous goods in excepted quantities)"로 기재하고, 해당 용기가 회수용기 또는 세정되지 아니한 빈 용기(이하 "비세정빈 용기"라 한다)인 경우에는 관련 서류에 각각 "회수용기(SALVAGE PACKAGING)" 또는 "비세정빈용기(EMPTY UNCLEANED 또는 RESIDUE- LAST C ONTAINED)"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 설>

----- 회수압력용기, 세정
되지 -----

----- "회수압력용기(SAL
VAGE PRESSURE RECEPTA
CLE)", "비세정빈용기(EMPTY
UNCLEANED 또는 RESIDUE
- LAST CONTAINED)"--.

⑦ 해당 위험물이 다음 각 호의
물질인 경우에는 관련 서류에
각각 제어온도(Control tempera
ture)와 비상온도(Emergency te
mperature)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운송 중 온도관리가 필요한
제4.1급의 자기반응성 물질, 중
합성물질 및 제5.2급의 유기과

	<u>산화물</u> 2.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험물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위험물의 품명에 “안정화된 것(STABILIZED)”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고 위험물의 안정화를 위해 온도제어가 필요한 물질
제18조(선장의 의무) ① · ② (생략) <u><신 설></u>	제18조(선장의 의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위험물 중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위험물의 경우에는 위험한 분해 또는 중합반응을 방지하기 위해 송하인이 온도제어, 반응 억제제 사용 등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한 것을 확인하고 위험물을 운송해야만 한다. 1. 제2급의 고압가스 2. 제3급의 인화성 액체류 3. 제6.1급의 독물 4. 제8급의 부식성 물질
제20조(위험물의 격리) ① · ② (생략) ③ <u>관할지방해양항만청장등이</u> 제1항과 제2항의 격리방법 외에 다른 방법에 따른 위험물의 격	제20조(위험물의 격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u>-----

③ ~ ⑦ (생 략)

제24조의4(위험물운송적합증의 재발급 등) ① 선박의 소유자는 위험물운송적합증에 적힌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물운송적합증 재발급신청서에 해당 위험물운송적합증과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해양항만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박의 소유자는 위험물운송적합증을 잃어버렸거나 위험물운송적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물운송적합증 재발급신청서에 분실사유서 또는 헐어 못쓰게 된 위험물운송적합증을 첨부하여 관할지방해양항만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의5(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반납) 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험물운송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4조의4(위험물운송적합증의 재발급 등) ① -----

----- 첨부하여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
-----.

② -----

----- 관
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
-----.

제24조의5(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반납) -----

----- 위험물운송

<u>적합증을 관할지방해양항만청</u> <u>장등에게 반납하여야 한다.</u> 1. 2. (생략)	<u>적합증을 관할지방해양수산청</u> <u>장등-----.</u> 1. 2. (현행과 같음)
제25조(사고보고) 선장은 운송하는 위험물로 인명, 선박 또는 다른 화물에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재해가 발생한 지역 또는 해당 재해가 발생한 후 최초로 입항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재해가 발생한 일시, 장소 및 원인과 해당 위험물의 품명, 수량, 용기, 포장 및 적재방법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법」에 따라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사고보고) ----- -----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위험물이 바다에 유실되었거나 선외로 유실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 ----- ----- ----- ----- ----- -. ----- ----- -.
제34조(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 ① ~ ④ (생략) ⑤ 해당 위험물이 해양오염물질, 폐기물, 소량의 위험물 또는 극소량의 위험물인 경우 관련서류에 각각 "해양오염물질(MARINE POLLUTANT)" 또는 "해	제34조(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신 설>

----- "회수압력용기(S
ALVAGE PRESSURE RECEP
TACLE)", "비세정빈용기(EMP
TY UNCLEAND 또는 RESI
DUE - LAST CONTAINED)"

– 49 –

	<u>2.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험물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위험물의 품명에 “안정화된 것(STABILIZED)”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고 위험물의 안정화를 위해 온도제어가 필요한 물질</u>
제35조(컨테이너의 적재 전 확인 등) ①・② (생략) <u><신설></u>	제35조(컨테이너의 적재 전 확인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선장은 훈증 소독된 컨테이너를 선적할 경우에는 훈증제가 컨테이너에 투입된 후부터 최소 24시간이 지난 이후에 선박에 적재하여야 하며 해당 컨테이너에 제33조제4항에 따른 표찰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u> <u>④ 송하인은 훈증 소독된 컨테이너를 선박에 선적할 경우에는 훈증 소독을 실시한 일자와 시간, 사용한 훈증제의 종류와 양(量) 등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u>
제39조의2(화약류등 분류 승인) <u><신설></u>	제39조의2(화약류 분류 승인) ① <u>송하인은 화약류를 운송하기 전에 국제연합번호, 품명 등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u>

	<u>다른 화약류 분류에 대해 관할지 방해양수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라 화약류 분류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1.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소속의 위험물운송 전문가 위원회(UNTDG)가 개발한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에 서 정한 시험기준에 따른 화약류 분류 시험결과 또는 방위사업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한 화약류의 국제연합번호가 기재된 서류</u> <u>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u> <u>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경찰청장의 허가서류 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출 허가 결</u>
--	--

	<u>과 서류 또는 「방위사업법」 제 57조제2항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의 수출 허가 서류</u> <u>4. 그 밖에 화약류 분류를 위해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u> <u>③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화약류 분류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하여 분류가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분류가 적합할 경우 별지 제6호의2 서식의 화약류분류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u> <u>④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화약류 분류가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u>
제42조(화약류와 다른 위험물과의 관계) ① ~ ④ (생략) <u>⑤ 화약류(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화약류를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위험물은 동일한 선박에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u> <u>1. 이황화탄소</u>	제42조(화약류와 다른 위험물과의 관계)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삭 제></u>

다)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u>관할지방해양항만청장</u> 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 3. (생략) ⑥ (생략) 1. (생략) 2. 컨테이너 전용 크레인을 사용할 것. 다만, <u>관할지방해양항만청장</u>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u>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u>----- -----. 1. ~ 3.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u>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u>----- -----.
제48조(적재방법) ① (생략) ② 화약류를 갑판 상에 적재할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 2. (생략) 3. 선교(船橋), 거주 장소, 구명정, 구명뗏목, 구조정 및 승정(乘艇) 장소로부터 수평거리 <u>8미터</u> 이상의 거리를 <u>유지</u>할 것 4. (생략) <u><신설></u>	제48조(적재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2. (현행과 같음) 3. ----- ----- <u>12미터</u> ----- <u>유지(등급 1.4는 제외한다)</u>----- - 4. (현행과 같음) 5. 선측으로부터 선박너비의 <u>8분의 1 또는 2.4미터 중 짧은 길이 이상의 거리를 두어 적재</u>

	<u>할 것. 다만, 화약류 등급 1.4의 경우는 제외한다.</u>
제123조의2(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의 용기 및 포장 등) ① 선박으로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송하인은 그 용기·포장 및 표찰에 대하여, 선장은 그 적재방법에 대하여 <u>각각 관할지방해양항만청장등의</u>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생략)	제123조의2(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의 용기 및 포장 등) ① -- ----- ----- ----- ----- ----- <u>각각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u>----- -----. ② (현행과 같음)
제147조(적재방법) ①·② (생략) ③ 질량 1천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저인화점 인화성 액체나 중인화점 인화성 액체(이하 "저인화점인화성액체등"이라 한다)를 적재한 화물창이나 구획과 이에 인접하는 화물창이나 구획에는 인화성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는 제외한다)를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u>관할지방해양항만청장등의</u>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략)	제147조(적재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u>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u>----- -----. ④ (현행과 같음)
제148조(전기장치) ①·② (생략)	제148조(전기장치) ①·② (현행과 같음)

음 각 호의 위험물을 운송하려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적재방법, 해당 위험물에 적합한 용기·포장의 사용여부와 표시 및 표찰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등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물적재검사신청서를 관할지방해양항만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할지방해양항만청장등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물적재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 선장이 제3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하는 경우와 관할지방해양항만청장등이 제4항에 따라 위험물적재검사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 관할지방
해양수산청장등-----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관할지방해양수산
청장등-----

-----.

④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

-----.

⑤ (현행과 같음)

⑥ -----
----- 관할지방해양
수산청장등-----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 ----- -----.
제205조(컨테이너수납검사) ① 송하인이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송하려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수납방법, 해당 위험물에 적합한 용기·포장의 사용 여부와 표시 및 표찰의 적합 여부에 관하여 <u>관할지방해양항만청장등</u>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험물컨테이너수납검사신청서를 <u>관할지방해양항만청장등</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5조(컨테이너수납검사) ① -- ----- ----- ----- ----- ----- ----- ----- <u>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u>-----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u>----- ----- ----- ----- ----- ----- -----

④ <u>관할지방해양항만청장등</u>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위험물컨테이너수납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 ⑦ (생략) ⑧ 송하인 또는 선박소유자가 제3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하는 경우와 <u>관할지방해양항만청장등</u>이 제4항에 따라 위험물컨테이너수납검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제204조제6항을 준용한다. ⑨ 송하인이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송하려는 경우에도 컨테이너 수납방법, 해당 위험물에 적합한 용기·포장의 사용 여부와 표시 및 표찰의 적합 여부에 관하여 <u>관할지방해양항만청장등</u>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u>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u>----- ----- ----- ----- -----.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 ----- ----- --- <u>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u>----- ----- ----- -----. ⑨ ----- ----- ----- ----- ----- ----- ----- <u>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u>----- -----. ----- -----.
제205조의2(용기·포장검사) ①	제205조의2(용기·포장검사) ① -

위험물을 운송하는 용기 및 포장은 그 용기 및 포장의 안전성을 <u>관할지방해양항만청장등</u>에게 검사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위험물용기검사신청서를 <u>관할지방해양항만청장등</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u>관할지방해양항만청장등</u>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한 용기 및 포장에 별지 제3호도식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위험물용기검사증을 그 검사를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⑥ 제1항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라 검사신청하는 경우와 <u>관할지방해양항만청장등</u>이 제3항에 따라 위험물용기검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제204조제6항을 준용한다.	----- ----- <u>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u>----- -----. ② ----- ----- ----- <u>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u>----- ----- ----- -----. ③ <u>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u>----- ----- ----- ----- ----- ----- -----.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u>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u>--- ----- ----- -----.
제208조(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제208조(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지정신청)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 지정검사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다만, 제205조의2에 따라 용기·포장검사를 할 수 있는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이어야 한다.	지정신청) ① ----- ----- ----- ----- ----. ----- ----- ----- ----- -----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4조에 의한 품질경영시스템(ISO 9000 표준 시리즈)을 인증받은 기관이어야 한다.
제220조(저장의 특례) ①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위험물의 용기, 포장 및 표찰은 저장위탁자(타인에게 저장을 위탁하지 아니하고 저장할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계류(繫留)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20조(저장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지방해양수 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 -----.
제225조(저장선의 위치) 화약류의 저장선은 항로, 정박지, 선장(船場), 가옥, 가스탱크와 그 밖의	제225조(저장선의 위치) ----- ----- -----

건조물, 철도, 궤도, 국도와 지방도로부터 70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계류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과 저장하는 화약류의 종류 또는 수량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u>관할지방해양항만청장등</u>이 위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정도에 따라 일정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 ----- ----- <u>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u>----- ----- ----- ----- -----
제232조(용기, 포장) ① (생략) ② 저장선에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을 저장하는 경우 저장 위탁자는 해당 물질에 정표찰 6.2를 붙이고 용기 및 포장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u>관할지방해양항만청장등</u>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32조(용기, 포장)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u>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u>-----.
제233조(저장선의 구조등) ① 저장선에 화약류 외의 위험물을 저장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저장선의 구조와 설비, 저장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u>관할지방해양항만청장등</u>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들을 변경할	제233조(저장선의 구조등) ① --- ----- ----- ----- ----- ----- <u>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u>-----.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u>관할지방해양항만청장등</u> 은	② <u>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u> ----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는데 필요	-----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	-----
에 따라 신고하는 사항에 대하	-----
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